

「평창군 새마을운동조직 활성화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 사 경 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2. 11. 23(금) 평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12. 11.. 26(월)

다. 상정일자 : 2012. 12. 20(목) 제19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
제1차 조례특위 상정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자치행정과장)

- 주민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선진형 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새마을운동 조직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
- 조례제정의 목적에 부합하는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새마을 회원에 대한 사기진작 시책을 조례에 명문화하여 추진하고자 함.
- 지원 (안 제3조)
 - 새마을지도자 교육훈련(새마을중앙회 및 도지회 주관 교육)
 - 향토지구독
 - 국내외 선진지 견학
 - 새마을운동 한마음대회 및 평가대회
 - 상해보험 가입
 - 각종 새마을행사(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 등 도단위 이상 행사) 참석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장동기)

- 본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 회원들의 자긍심 고취와 함께 사기진작, 조직강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보완 신설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임.
- 주요 내용을 보면
 - 사기진작을 위하여 새마을지도자 교육훈련, 향토지 구독, 선진지 견학, 상해보험가입 등 지원대상사업을 세분화·명문화 하였음.
- 본 조례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이·반장과 동일하게 많은 역할을 수행하는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원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세분화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새마을운동조직 활성화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1부